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 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재호 · 정재완

2015. 11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 관세법 운영현황	2
1. 연혁	2
2. 내국세제와의 비교	4
가. 조세행정의 목적	4
나. 세법운용의 한계성	7
다. 조세채무의 성립과 과세표준 확정과정	8
라.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	11
마.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와 관련한 과세	14
III. 주요국의 관세법 운영현황	16
1. 미국	16
가. 관세법 연혁	16
나. 관세법 체계	17
2. 일본	21
가. 관세 법제 연혁	21
나. 주요 법령들의 구성 체계	23
3. EU	29
가. 관세법 연혁	29
나. 신유럽공동관세법의 구성 체계	30

4. 중국	33
가. 관세법 연혁	33
나. 해관법의 구성 체계	34
IV. 요약	37
1. 관세법의 조세법적 특징	37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법 운영 현황 비교	38
참고문헌	39

표 목 차

〈표 II-1〉 현행 관세법의 내용	4
〈표 II-2〉 각 세법의 입법목적	5
〈표 II-3〉 납세의무의 성립원인과 성립시기	9
〈표 III-1〉 미국 U.S. Code Title 19(Custom Duties) 수록법령	18
〈표 III-2〉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19 U.S.C.)의 구성	20
〈표 III-3〉 미국 C.F.R Title 19(Customs Duties)의 구성	21
〈표 III-4〉 일본 세관의 주요 역사	22
〈표 III-5〉 일본의 수출입 관련 주요 법률	23
〈표 III-6〉 일본 관세법 구성	25
〈표 III-7〉 일본 관세정률법 구성	26
〈표 III-8〉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구성	28
〈표 III-9〉 EU 신관세법의 구성	31
〈표 III-10〉 중국 해관법 구성개요	35
〈표 III-11〉 수출입관세조례 구성개요	35

I 서론

관세법은 관세라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물품의 수입, 운송, 수출 및 세관의 권한과 절차 등과 관련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관세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이라 할 때는 관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형식적 의미의 관세법과 기타 관세 및 수입, 수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광의의 관세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¹⁾

관세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되는데 법률적인 특징으로서 성문법 체계에 의하는 것이나, 강행법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점, 법의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 과세요건이나 징수절차 등에 있어 형식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내국세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인 제도로서 납세절차에 있어서도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부과제척 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는 점,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관련하여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미납 시 가산금제도와 체납처분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비롯한 납세자 존중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법의 운영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세법적 성격의 관세법에 중점을 두어 조세법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관세법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p. 3~4.

II

우리나라 관세법 운영현황

1. 연혁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자주적 관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관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²⁾ 이때 형성된 관세법의 기본적인 틀은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³⁾ 2011년 12월까지 타법 부칙에서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5회 개정되었는데, 대부분 부분 개정되었고, 1967년 11월 단 1회만 전부 개정되었다.⁴⁾

초기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 내용은 관세의 과세·징수·징수면제와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세운송·내국운송 및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 등 운송 및 통관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세구역울 지정보세구역과 특별보세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세관장 등 세관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법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헌 국회 때 제정된 제정 「관세법」은 본문 251개조를 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부칙 2개 조를 추가하여 총 253개 조로 구성되었다⁵⁾. 현행 「관세법」은 총 13개장(章) 3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1장(총칙)부터 제5장(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까지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稅法) 관련 규정이고, 제6장(운송수단)부터 제10장(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까지는 통관 등 절차 관련 규정이며, 그 위반 등과 관련하여 형사법 성격의 규정으로 제11장(벌칙)과 제12장(조사와 처분)을 두고 있고, 제13장에는 부수적으로 전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칙을 두고 있다.⁶⁾

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적절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며, 통관법은 수출입 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 신속한 통관을 통한 무역 촉진, 공정 무역질서

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19.

3) 이세정 외, 『관세법 분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2.

4) 이세정 외, 『관세법 분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2.

5) 이세정 외, 『관세법 분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pp. 16~17.

6) 손병주 외, 『관세법체계정비방안』,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12, p. 16.

의 확립,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의 보장과 국제 무역질서 급변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제헌헌법 제2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0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였다.⁷⁾ 관세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만 부과된다.⁸⁾

현행 관세법 제2장에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산출방식, 신고납부 방식과 예외적으로 부과지 방식의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는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관세율의 종류와 적용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협약 품목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품목 분류표로 기본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품목분류표인 관세율표를 법 별표에 수록하고 있다. 관세법 별표상의 품목분류는 6단위까지만 표기하며, HS협약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10단위로 세분류하여 WTO양허세율, FTA협정세율 책정 및 수출입 공고·통합공고, 수출입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운용하고 있다.⁹⁾

7) 권해호, 『예산법률주의 도입 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 좋은예산센터, 2005, p. 89.

8)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4, p. 265.

9)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4, p. 284.

〈표 II-1〉 현행 관세법의 내용

구분	해당 규정
세법	제1장 총칙 (§ 1 ~ § 13)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관세 부과·징수 등 (§ 14 ~ § 48)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49 ~ § 87)
	제4장 감면·환급, 분할납부 등 (§ 88 ~ § 109)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110 ~ § 132)
통관 절차 등 관세행정	제6장 운송수단 (§ 133 ~ § 153) - 개항, 선박·항공기·차량의 입출항 절차, 물품의 하역 등
	제7장 보세구역 (§ 154 ~ § 212) - 지정, 특허,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관리
	제8장 운송 (§ 213 ~ § 225) - 보세운송 신고와 그 절차,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등
	제9장 통관 (§ 226 ~ § 261) - 통관 절차·요건·제한, 원산지 확인, 수출입 신고·검사, 통관절차 특례 등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262 ~ § 268) - 과세자료 요청, 물품검사 등
벌칙과 조사처분	제11장 벌칙 (§ 268의2 ~ § 282)
	제12장 조사와 처분 (§ 283 ~ § 319)
보칙	제13장 보칙 (§ 320 ~ § 329)

출처: 손병주 외, 『관세법 체계 정비방안』,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12, p. 16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2. 내국세제와의 비교

아래에서는 관세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내국세제와의 차이점을 조세행정의 목적, 세법운용의 한계성, 조세채무의 성립과 과세표준 확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세행정의 목적

내국세법과 관세법은 다 같이 헌법의 질서 아래 특정 목적을 위해 입법되는 것이나 입법목적 자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결과 해당 세법에 의한 주요 조세정책의 지향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각 세법(제1조)에 명시된 해당 세법의 제정이유 내지 입법목적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⁰⁾

10) 내국세법 중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과 관세법 중 환급특례법과 FTA관세특례법은 세법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표 II-2〉 각 세법의 입법목적

구분	법률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입법목적
내국세	소득세법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법인세법	없음 ¹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없음 ¹²⁾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부가가치세법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개별소비세법	없음 ¹³⁾
	주세법	없음 ¹⁴⁾
	인지세법	없음 ¹⁵⁾
	증권거래세법	없음 ¹⁶⁾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교육세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자원 확보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	
관세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정, 관세수입 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해당 세법을 기초로 저자 작성

- 11) 법인세법에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법 제정(1949.11.7.) 시 밝힌 제정 이유는 “중전에는 구 법령인 조선포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이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3.22. 제정된 상속세법의 명칭을 1998.4.1. 변경하여 제정한 것으로, 동법 또는 그 이전의 상속세법에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상속세법 제정 시 밝힌 제정 이유는 “소득 세제에 대한 보완제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 13) 개별소비세법은 2008.1.1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의 명칭을 변경하여 제정한 것으로, 1977.7.1. 제정된 특별소비세법 자체에서도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법 제정 시 밝힌 제정 이유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임”이었다. 세법의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였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 14) 주세법 자체에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1949.10.21. 입법 시 밝힌 제정 이유는 “건국 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 15) 인지세법 자체에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1950.3.10. 입법 시 밝힌 제정 이유는 “구법령인 조선포세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제도를 법제화하되,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등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 16) 증권거래세법에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1978.12.5. 입법 시 밝힌 제정 이유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상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내국세법의 경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3개의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에서 재정수입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입법목적임이 드러난다. 이에 더하여 일부 세법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즉,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소득재분배가 주요한 입법목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수입 확보와 실질적 평등의 추구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은 법 자체에 입법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세법에서도 해당 세법 제정 시 설명된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관세법은 재정수입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신 수출입물품의 통관의 적정성 확보와 관세수입 확보를 입법목적이라 명시하고 있다. 관세법에서 관세수입 확보와는 별개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성 확보'를 우선적인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나 사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폭발물이나 무기·마약 등의 단속, 산업보호, 건강한 국민생활의 보장,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차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동식물이나 환경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⁷⁾

관세수입의 경우 내국세와 같이 재정수입 측면이 고려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그보다 우선해서 고려되는 것이 산업보호 또는 국제통상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목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일종의 정책목표를 국가경제정책 목표 중 우선적으로 설정하는데, 그 주요한 정책수단이 관세율로 나타나는 관세적 수단과, 수입할당제 등으로 나타나는 비관세적 수단이다.¹⁸⁾ 국제사회에서 관세는 무역정책 수단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국의 무역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이다.¹⁹⁾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재정수입 확보'라는 표현 대신 '관세수입 확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탄력관세제도²⁰⁾의 운용내용을 살펴봐도 바로 드러난다.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농수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포함), 보복관세, 조정관세 등으로 관세율을 크게 높여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제통상 확대를 목적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설정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협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 혹은 일반특혜관세

17) 정재완, 『관세법』, 서울: 무역경영사, 2015, pp. 4~5.

18) 신현중, 『무역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6, p. 16.

19) 표학길, 『국제무역론』, 서울: 무역경영사, 2009, p. 288.

20) 탄력관세란 국회가 제정한 관세율(관세율표에 의한 기본관세)을 행정부가 일정한 요인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9&layoutMenuNo=104, 검색일자 2015.08.19.).

나 편익관세와 같이 관세율을 대폭 낮추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징수의 우선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조세입법과, 그 입법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측면이나 법적 측면, 그리고 정책과 법의 연계 측면에서 내국세제와 관세제도는 상이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세법에 대한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서 입법 심의기준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²¹⁾ 세법의 입법과 입법심의에서는 내국세와 관세의 이러한 차이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세법운용의 한계성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국민경제는 외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환경이 반영되어 수많은 조세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왔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5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 조약은 일반 법률에 대해 특별법 성격을 가지므로 법 적용 원칙의 하나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에 따라 법률의 개정으로 조약과 상치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개정 법률은 조약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²²⁾

내국세법과 관세법은 모두 관련되는 여러 조약의 영향을 받지만 내국세와 관세는 조약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약 자체도 차이가 있지만 납세의무자들이 이와 같은 조약을 악용하여 납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내국세와 관세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내국세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조세체결국에 경제적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래를 위장함으로써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시도할 수 있으나,²³⁾ 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소재지가 아닌 실물인 상품이 문제의 핵심이 되므로 조약상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류행위의 조정이나 거래서류의 조작 등이 시도될 수 있다.²⁴⁾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21) 최미희·이한규, 「조세정책세계 입법심의를 문제와 과제」,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pp. 63~94.

22) 임승순, 『조세법』, 서울: 박영사, 2015, p. 25.

23) 이경근,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Treaty shopping 방지방안」, 『조세연구』 제6집, 한국세법학회, 2006, pp. 65~88; 김진웅,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조세연구』 제9집 제3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pp. 29~70.

24) 김만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 pp. 73~89; 정재완, 「한국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5, pp. 3~23.

법 규정이나 과세관청의 대응방법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한편, 관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 국제간 거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제성이 강하고, 따라서 관세법의 운용에서 무역 및 관세와 관련한 글로벌규범인 WTO 협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최근의 세계화 추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WTO 협정으로서 관세제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는 과세요건의 핵심이 되는 과세표준과 관세율(국제협력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이다. WTO는 관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협정으로써 명문화하였고(관세평가협정),²⁵⁾ 각국이 양허한 관세율 및 이러한 관세율의 예외로서 적용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그리고 보복관세의 관세율 결정방법도 각각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이러한 협정규정을 벗어나 관세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WTO 협정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자기 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고,²⁶⁾ 만일 그 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WTO 회원국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의무의 면제가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WTO는 만일 협정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협정 불이행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WTO 규범에 의한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²⁷⁾

다. 조세채무의 성립과 과세표준 확정과정

내국세와 관세의 부과징수는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일정한 금전을 강제 징수한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같지만 구체적인 부과징수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내국세제와 관세제도를 운용하는 징세행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내국세와 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실체법적 개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5) 정식명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다.

26) WTO 설립협정 제16조 제4항. 만일 이와 같은 의무를 어겨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협정국이 있을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소 절차 및 판정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WTO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참조.

27)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上)』, 1994, pp. 557~679.

〈표 II-3〉 납세의무의 성립원인과 성립시기

구분	법률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²⁸⁾
내국세	소득세	소득의 발생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	소득의 발생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상속세	상속의 발생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의 발생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일정액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의 보유	과세기준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개별소비세	특정된 과세대상물품의 반출 또는 판매, 과세장소 입장, 또는 영업행위나 수입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 판매장 판매, 과세장소 입장, 유통음식행위 및 과세 영업장소 영업행위시, 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주세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	주류의 제조/출고, 또는 수입신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계약서나 증명서 작성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발생,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 발생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레저세·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발생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관세	관세법	물품의 수입	수입신고를 하는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20, 해당 세법을 기초로 저자 작성

표와 같이 내국세와 관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세채무를 확정해야 한다. 내국세의 조세채무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그리고 자동확정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²⁹⁾ 여기에서 관세제도에는 없는 과세방식이 자동확정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확정되는 것으로, 세액 확정 이후에는 징수(원천징수

28) 내국세의 세목별 조세채무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29) 임승순, 『조세법』, 서울: 박영사, 2015, pp. 179~182.

포함)의 문제만이 남는다. 해당하는 세목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등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반면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경우는 조세채무 확정을 위한 절차적 순서로 신고와 수정신고, 부과처분, 경정처분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내국세들과³⁰⁾ 관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대체로 그 과정과 방법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내국세제와 관세제도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세의무 발생 사실의 파악과 관련해서다. 신고납부제도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자율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들어 과세관청이 직접 부과지 해야 한다. 관세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입통관이 종료될 때까지 엄격하게 구분되어 통제되므로 과세당국이 수입 사실 즉,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³¹⁾ 그러나 소득세나 증여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증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자체와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과세당국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³²⁾ 이런 이유로 관세의 경우 납세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소득세나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의 경우는 납세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된다.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한계는 세무조사 또는 관세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³³⁾ 내국세의 세무조사권 행사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 한계 등³⁴⁾은 관세의 관세조사권 행사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혹은 관세조사를 벌일 경우 내국세와 관세의 이러한 차이는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관련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³⁵⁾

다음으로 과세요건 가운데 과세표준의 결정에서는 내국세와 관세는 재량 측면에서

30) 내국세에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31) 물론 많지는 않지만 범죄 의도를 가지고 밀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2) 이상훈·조은아, “자녀 전세금에 뭉치돈 편법 증여… 주변 전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려”, 동아일보, 2015.9.10., <http://news.donga.com/3/all/20150910/73534816/1>, 검색일자 2015. 12. 3.

33) 정진오·정지선,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 pp.46~91.

34)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4, pp. 65~78.

35) 그러므로 관세의 경우 어떤 세수목표를 정해두고 관세조사를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내국세 중 인지세나 증권거래세는 과세표준이 외견상 명백하고,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재화의 거래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과세표준 산정이 그다지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산정이 복잡하다. 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과세물건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인정방법은 그 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 또는 자료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실액방법과 추계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추계방법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빙 그 밖의 직접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태, 수입이나 지출의 현황, 생산량과 판매량, 종업원 수 등과 함께 사업의 규모 등 그 밖의 간접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과세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이 동업자권형, 표준소득률 등 통계적·경험적 근거에 의해 정형화되어 있다고는 하나³⁶⁾ 재량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과세표준의 결정과 관련해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의 계산이나 공제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재량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과세표준의 결정에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아주 협소한 관세의 경우와 대비되는 것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고, 대금의 지급과 영수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금액의 파악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관세에서도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고 과세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과세표준 결정상의 특징으로 인해 내국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정송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이나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있는 반면³⁷⁾ 관세의 경우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

내국세법에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등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의 공평부담, 조세채권의 실현 등을 위해 각종 행정상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증명서의 제출(국세징수법 제5조),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제7조), 가산금제도(국세징수법 제21조), 체납

36) 임승순, 『조세법』, 서울: 박영사, 2015, pp. 480~489.

37) 김법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 pp. 159~204.

및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국세징수법 제7조의 4), 가산세제도(국세기본법 제5장제3절과 각 세법) 등이 그것이다. 관세법에도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 통관물품의 적법성 확보 등을 위해 납세증명서의 제출(관세법 제116조의 3), 체납자료의 제공(관세법 제44조), 가산금제도(관세법 제41조), 가산세제도(관세법 제42조)³⁸⁾ 등을 두고 있고, 그 외에 과징금제도(관세법 제178조, 제224조, 제327조의 2)와 통관 보류제도(관세법 제237조),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관세법 제238조) 등도 규정하고 있어 내국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탈세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조세회피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국세에서는 소득세법(제41조) 및 법인세법(제52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역합병에 관한 규제제도(제4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 제제도(제45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과세제도(제4조), 조세피난처제도, 과소자본세제 등이 있다.³⁹⁾ 관세에서도 당연히 조세회피 시도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관세에서는 국내법상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대응수단의 지속적인 개발은 내국세와 관세 모두의 과제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와 같은 행정상 제재규정 또는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세법상 각종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내국세법을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두어 조세형벌과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고,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형벌과 과태료로 제재한다. 세법에 규정된 형벌 대상인 조세범(조세범처벌법 제3조 내지 제15조)과 관세범(관세법 제268조의2 내지 제276조)의 처벌규정은 다양하다. 조세범처벌법은 여러 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빈번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제3조에 규정된 조세포탈범이겠지만 그 외에도 면세유부정유통죄, 면세유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죄, 무면허 주류의 제조·판매죄, 체납처분면탈죄, 장부멸실죄, 성실신고방해행

38) 관세의 가산세제도에 대해서는 김종근,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기준」, 『관세학회지』, 제12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1, pp. 3~23을 참조.

39) 안경봉·오윤,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8, pp. 241~275.

위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죄, 명의대여금지위반죄, 납세증명표지불법사용죄,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위반죄,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죄,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처벌규정은 모두 탈세와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므로 탈세범과 탈세 관련사범, 그리고 조세질서범으로 구분될 수 있다.⁴⁰⁾ 반면 관세법은 이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와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이지만 그 외에도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무허가전자문서중계사업죄, 전자문서·정보훼손 또는 비밀침해죄, 전자문서등의 비밀누설 또는 도용죄, 금지품수출입죄, 허위증명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 가격조작죄, 밀수품의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죄, 체납처분면탈죄, 압수물품 부정사용죄, 명의대여금지위반죄, 허위신고죄 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내국세의 조세범과 같이 탈세와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도 있으나 조세와는 전혀 무관한, 불법적인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처벌규정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조세범과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범의 처벌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조세범은 관세범과 달리 형사범이라기보다 행정범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조세범에 대해서도 오늘날에 와서는 이를 형사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세라고는 하나⁴¹⁾ 조세범처벌법에는 고발전치주의나 형법상의 책임제한, 양벌규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조세범을 관세범과는 달리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으로까지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관세범에 대해서도 고발전치주의나 형법상의 책임제한, 양벌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음은 조세범과 같으나, 관세범에 대해서는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60여년 가까이 이를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으로 간주해 온 전통이 있고⁴²⁾, 현재도 유사한 규모의 조세포탈일지라도 법률에 규정된 처벌 수준은 관세범이 더 높다.⁴³⁾ 또한 처벌 여부의 판단에서도 엄격하기 때문에 조사 처분되는 사례도 빈번하지

40)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제6집, 2006, pp. 451~464.
 41) 안대희, 『조세형사법』, 서울: 법문사, 2005, pp. 104-105; 정성윤,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4권제3집, 한국세법학회, 2014, pp. 267~304
 42) 이철희, 『관세법정해』, 한국관세협회, 1977, p.414; 장병철, 『관세법』, 서울: 무역경영사, 1999, p.448.
 43) 예를 들어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그러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1961년 제6차 「관세법」 개정(법률 제600호)때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처벌규정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관세법」 제270조).

는 것이다. 관세법은 성격상 재산의 국외도피나 산업피해 발생 등 여러 영역에서 국익과 직접 관련되는 측면이 강하다.⁴⁴⁾ 뿐만 아니라 조세와 무관한 불법적인 물품의 수출입은 국가안보나 사회안전, 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조세법보다 관세법의 처벌이 더 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⁴⁵⁾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내리는 양형 수준도 조세법보다는 관세법이 높게 나타난다.

마.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와 관련한 과세

현행법상 내국세와 관세는 과세요건이 서로 다르지만, 국제거래기업의 소득과세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과세에서 과세표준 결정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와 관련한 과세에서 내국세와 관세 간 조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에 규정된 국세의 정상가격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과 관련한 규정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⁴⁶⁾

소득(법인)세법에는 다국적기업들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 소득을 상대방 특수관계기업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통해 시장가격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것이다.⁴⁷⁾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이전가격과세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44) 물론 조세법의 경우도 역외탈세법과 같은 경우는 그 반사회성에서 관세법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4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조세포탈법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동법 제8조), 관세법의 경우 금지품수출입죄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도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6조).

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결정청구), 동법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 동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참조.

47) 오윤,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조세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6, pp. 234~273.

이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해 내국세 과세당국은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이미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관세당국은 내국세 과세당국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처분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각각 경정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내국세 과세당국에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승인을 신청하거나 관세당국에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신청이 있을 때는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III

주요국의 관세법 운영현황

1. 미국

가. 관세법 연혁

1789년 미합중국 헌법이 제정되어 연방정부는 같은 해 7월 4일에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정하는 법률을 정하였고, 7월 31일에는 관세의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최초의 관세법을 제정하였다.⁴⁸⁾ 이 법에 중가세와 종량세를 정하여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0년 현재 시행되는 관세법의 관세 부과와 통관과 관련하여 기본법적 역할을 담당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Tariff Act of 1930)’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만개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평균 48%대의 매우 높은 관세 부과를 규정하였다.⁴⁹⁾ 이 법률은 미국 관세율을 광범위하게 인상하여 세율 면에서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 이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⁵⁰⁾ 관세를 다른 나라와 교섭 없이 미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무조건 최혜국 대우를 받기 위해 보복관세조항을 두었다.⁵¹⁾

미국의 현행 관세법은 상기의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근간으로 하여 여러 수정을 거쳐 미국 연방법전(U.S. Code) 총 54편 가운데 제19편(Title 19 Customs Duties)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법전 제19편에는 상기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근간이 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우루과이라운드 자유무역협정 등 관세율, 통상교섭 및 무역협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연방법전 제19편은 광의의 관세법이라

48)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윤·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13.

49) 관세청, 『미국 관세법』, 2012.

50)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윤·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14.

51)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윤·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14.

할 수 있으며, 제4장의 ‘1930년 관세법’은 협의의 관세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관세법상 통관 관련 규정은 1933년 농업조정법, 1923년 자유무역지역법, 1978년 통관절차 개혁 및 간소화법, 1980년 세관법원법, 2002년 국토안보부법, 2002년 무역법 등 다양한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993년에 제정된 관세근대화법(Mod Act, 1993)은 통관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현행 관세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⁵²⁾ 이는 NAFTA 이행법(NAFTA Implementation Act)에 부속되는 형태(Title VI)로 제정되어 미국 세관행정의 효율화 및 자동화, 관세법령의 법규 준수 향상 등의 목적을 가진다. 세관업무에 있어서 종전 서류주의에서 전산화(paperless)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입자가 적절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관에 정보제공의무를 지우고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내용에 대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통관행정의 법규 준수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개정하였다.⁵³⁾

나. 관세법 체계

1) 연방법전 제19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개별 법률로 운영하지 않고 연방법전에 관세의 부과, 징수와 통관 관련 법률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연방법전 총 54편 가운데 관세법은 제19편 관세(Title 19 Customs Duties)의 제4장(Chapter 4 Tariff Act of 1930)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연방법전 제19편은 제4장을 포함한 26개의 장에서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 밀수, 무역촉진, 자유무역지역 등 통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관세법이라 할 수 있다. 수출입물품의 통관에는 비관세장벽인 농업 보호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은 연방법전에 함께 수록된 제7편 농업(Title 7 Agriculture), 제15편 통상과 무역(Commerce and Trade), 제16편 보호(Conservation), 제17편 지식재산권(Title 17 Copyrights) 등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법전 제19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지역, 공정무역 프로그램, 무역확대 프로그램 등의 통관 원활화 관련 법령과 협의의 관세법이라 할 수 있는 제4장, 특수물품

52)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6.

53)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윤·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p. 114~115.

(자동차, 시청각 재료, 건축적 조각 또는 벽화, 와인 등)의 수입,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또는特惠무역협정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NAFTA 와 관련된 제반 규정은 제21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각 FTA 체결국별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인 연방 관세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에 두고 있다.

〈표 III-1〉 미국 U.S. Code Title 19(Custom Duties) 수록법령

장 (Chapter)	조항	수록법령
1	§ 1-§ 70	징세구역, 항 및 직원
1A	§§ 81a-81u	외국무역지역
2	§§ 91,92-107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폐지 또는 삭제]
3	§§ 121-580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
4	§§ 1202-1683g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5	§§ 1701-1711	밀수
6	§§ 1751-1756	공정무역프로그램
7	§§ 1801-1991	무역확대프로그램
8	§§ 2001-2033	자동차
9	§§ 2051-2052	교육적 · 과학적 · 문화적인 시청각 재료
10	§§ 2071-2083	관세청
11	§§ 2091-2095	콜럼버스 이전의 기념물 또는 건축적 조각 또는 벽화의 수입
12	§§ 2101-2497b	1974년 통상법
13	§§ 2501-2582	1979년 통상협정법
14	§§ 2601-2613	문화자산에 관한 조약
15	§§ 2701-2707	카리브해 경제 회복
16	§§ 2801-2806	와인무역
17	§§ 2901-2906	통상협정의 교섭과 실시
18	§§ 3001-3012	통일관세율표(HS)의 실시
19	§§ 3101-3111	전기통신 무역
20	§§ 3201-3206	안데스 무역특혜
21	§§ 3301-3473	북미자유무역
22	§§ 3501-3624	우루과이라운드 자유무역협정
23	§§ 3701-374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특정무역 혜택 확대
24	§§ 3801-3813	양자무역 촉진 권한
25	§§ 3901-3913	투명 다이아몬드 무역
26	§§ 4001-4112	도미니카 공화국-중남미 공정무역

출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검색일자 2015. 11. 27.

미국 법령정보, www.law.cornell.edu, 검색일자 2015. 11. 27.

2)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미국 통일 관세율표, 특별규정, 행정절차, 상계관세반덤핑관세, 담배의 수입요건, 연질목재에 관한 총 6개의 절(Subtitle)로 구분되어 있다.

19 U.S.C 1202(관세율표, HTS)에 따라 미국 관세율표는 연방법전에 수록하지 않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관리 및 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세율표 주석의 간행물로 배포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율은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공표하는 미국 통일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른다. 관세법 제1절에 근거한 미국 통일관세율표에서는 품목분류, 품목 설명, 일반세율, 수입수량 제한, 특별세율,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부와 목적으로는 8단위, 통계 목적으로 10단위의 HS코드를 운영 중이다.

관세율을 제외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부분은 제Ⅲ절의 제1관과 제3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1관에는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3관에는 관세의 확인, 징수 및 추징(Ascertainment, Collection, and Recovery of Duties)으로 과세와 납세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신고된 물품의 과세처리와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방법을 순차적으로 열거하고, 제1497조에는 신고누락에 대한 몰수, 벌금 등의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1498조 규정에 따른 신고(Entry under regulations)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예외라 할 수 있는 물품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의 총액이 재무부장관이 규정으로 정한 2,500달러 이하의 간이신고대상 화물, 수입을 위한 항해중 송하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또는 해상 사고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물품, 난파 또는 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복구된 물품, 구매 또는 구매약정에 따라 구매되지 않은 것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외국에서 사용했던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 외국에 있는 자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에게 선물로 발송한 물품 및 그 가격에 신고 될 수 없다고 재무부장관이 판단한 물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03조 과세가격(Dutiable Value)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또한 증가세 방식으로 관세를 산출하고 있으며, 제1500조에 의거, 관세청은 수입자 등이 신고한 과세가격, 관세율과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관에는 관세평가 등 과세요건,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납세 절차, 보세화물, 관세사와 수출신고 요건 등 통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에서는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표 III-2〉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19 U.S.C.)의 구성

절(Subtitle)	관(Part)	조항	주요 내용
제 I 절 미국 통일 관세율표	-	1202조	관세율표 (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 II 절 특별규정	제1관	1301조~1323조	수입금지물품
	제2관	1330조~1341조	미국 국제통상위원회
	제3관	1351조~1367조	국제통상의 진흥
제 III 절 행정절차	제1관	1401조~1414조	통관 및 과세의 정의
	제2관	1431조~1467조	외국무역선(기) 등의 입출항
	제3관	1481조~1529조	수입통관과 과세 및 납세절차
	제4관	1551조~1565조	보세화물의 운송과 장치
	제5관	1581조~1631조	불법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치
	제6관	1641조~1654조	관세사와 수출신고요건 등
제 IV 절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제1관	1671조~1671h조	상계관세의 부과
	제2관	1673조~1673i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3관	1675조~1676a조	산업피해구제
	제4관	1677조~1677n조	산업구제 관련 기타 일반사항
제 V 절 담배의 수입요건	-	1681조~1681b조	특정담배 및 무연담배제품의 수입 적용요건
제 VI 절 연질목재	-	1683조~1683g조	연질 목재(softwood lumber)

출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검색일자 2015. 11. 27.

미국 법령정보, www.law.cornell.edu, 검색일자 2015. 11. 27.

상기 관세법의 하위 규정인 연방 관세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에는 관세와 통관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총 4개의 장(Chapter)과 360개의 절(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무역법과 해상운송안전법의 시행령이 2004년 공포되면서 세관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기 위한 선적화물정보 사전신고와 수출화물 통제와 관련된 규정들(Chapter I Part 4, 103, 113 등 7개의 절)이 대폭 개정되었다.⁵⁴⁾

54) 손병주·한위수·주한길·김성호·주성준·송준용·김규석·임대승, 『관세법 체계 정비방안』,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12.

제1장은 미국 관세국경관리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DOT) 관련 규정, 제2장은 무역위원회, 제3장은 ITA와 관련된 규정, 제4장은 이민관세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DHS 관련 규정의 공표가 보류 중에 있다. 특히 제1장은 담보, 외국무역지역, 청산, 검사, 벌칙, 환급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III-3〉 미국 C.F.R Title 19(Customs Duties)의 구성

Chapter	Part(Article)	주요 조항 별 내용	
I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Part 0 ~ 192 (0.1조 ~ 192.14조)	10.1~10.3034	조건부 감면
		101.0~101.9	일반 규정
		111.0~111.96	관세사
		113.0~113.75	관세 담보
		146.0~146.96	외국무역지역
		159.0~159.64	관세 청산
		162.0~162.96	검사, 조사 및 압수
		171.0~171.64	벌금, 벌칙 및 몰수
		191.0~191.195	환급
II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Part 200 ~ 213 (200.735조 ~ 213.6조)	192.0~192.14	수출통제
		202.1~202.6	물품 가격 조사
		204.1~204.5	농업 프로그램에 미치는 수입의 영향 조사
III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Part 351 ~ 360 (351.101조 ~ 360.108조)	213.1~213.6	무역구제
		351.101~351.702	반덤핑 및 상계관세
		354.1~354.19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행정보호명령 위반 시 제재 부과
		356.1~356.30	NAFTA 0행을 위한 절차 및 규정

출처: 성한경 · 이민선 · 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 59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2. 일본

가. 관세 법제 연혁

일본에서는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 부속서를 기원으로 1890년 세관절차에 관한 최초의 국내 법령인 관세법(關稅法)을 제정하였다. 이후 1887년 관세정률법(關稅定率

法) 공포, 보세창고법의 공포 및 시행, 1899년 관세정률법과 관세법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1954년 관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창고업법 등을 통합한 관세절차에 관한 통칙법으로서 관세법이 성립되었다. 1955년에는 GATT 가입이 정식으로 발효되어 본격적인 무역자유화 단계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이 제정되었다. 1967년에는 종전의 세관화물취급인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통관업법을 제정하였다. 1966년 신고납세 방식을 도입하고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하여 1977년 통관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NACCS)을 구축하여 관련 특례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III-4〉 일본 세관의 주요 역사

연도	주요 역사
1858	미국(6월), 네덜란드(7월), 러시아(7월), 영국(7월), 프랑스(9월)와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80	「관세법」 공포·시행
1887	「관세정률법」 공포, 「보세창고법」 공포·시행
1899	관세법 및 관세정률법 시행
1910	「관세정률법」 전부 개정, 공포 (1911년 7월 시행)
1951	「관세정률법」 세율 개정(종량세를 종가세로 변경)
1954	관세법 전부 개정, 시행(보세창고법 등 통합)
1955	일본의 GATT 가입 정식 발효
1960	「관세잠정조치법」 시행
1964	관세협력이사회(CCC)에 가입
1967	「통관업법」 시행
1977	통관정보처리시스템(NACCS) 특례법 공포, 시행 및 시스템 가동
1991	해상화물 통관 정보 처리 시스템 (Sea-NACCS) 및 통관 정보 종합 판정 시스템 (CS) 가동
2001	간이신고제도 도입
2006	특정수출신고제도 도입
2007	특정보세승인제도 도입
2010	Sea-NACCS와 Air-NACCS 통합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

출처: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검색일자 2015. 10. 31.

일본 재무성, 「관세법연구회정리(關稅法研究会とりまとめ)」, 2006. 6, pp. 6~7.

일본 관세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세율, 특혜관세 등 관세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된 세금에 관계되는 법률과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법률을 모두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과세요건, 환급, 감면 등을 규정하는 관세정률법, 국내산업보호 또는 물가안정 등을 위한 일시적인 관세율을 정하는 관세잠정조치법,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수징법 등이 있다. 통관 관련 법령으로는

기본법으로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허가 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는 관세법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개념인 일본이 체결하는 EPA에 관한 원산지증명과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EPA 원산지증명법, 우리의 관세사법과 유사하게 통관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관업법, 일본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특례사항과 동식물 검역, 사람 및 운송수단의 출입국 관리 업무 등에 관한 관계 정부부처 간 정보 통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NACCS법 등이 있다.

〈표 III-5〉 일본의 수출입 관련 주요 법률

구분		내용
세금 관련 법령	관세정률법	• 과세표준, 기본/간이세율, 평가, 특수관세, 감면, 환급
	관세잠정조치법	• 잠정세율, 특별간급관세, 관세간급조치, 특혜관세, 감면
	수징법	• 각종 소비세의 부과, 납부, 면제 등
통관 관련 법령	관세법	• 수입금지, 관세부과, 보세제도, 수입 신고 및 허가, 벌칙 등
	EPA 원산지증명법	• 원산지증명 및 검증
	통관업법	• 세관 통관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운영
	NACCS법	• 수출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 후생노동성(사람 + 식의약품) 및 농림수산성(동식물)의 검역 • 법무성의 출입국관리(사람) 및 국토교통성의 입출항 업무(운송수단) 처리를 위한 단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출처: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p. 117~118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관세 관련 주요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 관세정률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요 법령들의 구성 체계

1) 관세법

일본 관세법은 크게 세관의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절차와 물품의 통관절차로 나누어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세관의 관세의 부과와 징수와 불복 및 벌칙 등은 제2장과 제7장 내지 제11장에서,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보세운송 등은 제3장 내지 제6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장 관세의 확정 및 납부(제3조~제14조의5)는 제1절 통칙, 제2절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관세의 확정, 제3절 부과과세방식에 따른 관세의 확정,

제4절 관세의 납부 및 징수, 제5절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제6장 통관(제67조 ~ 제79조의5)은 제2절 수출신고의 특례, 제3절 제출서류 및 검사절차, 제4절 수출입 금지화물, 제5절 수출입에 관한 증명 등, 제6절 수입의 허가 및 수입화물의 거래 등, 제7절 외국화물의 반송 및 제8절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수입허가 등 관세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최초 처분을 한 세관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세관장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⁵⁵⁾ 구체적으로는 1962년 제정된 「행정불복심사법」과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되, 관세법에는 제89조 내지 제93조에 불복절차를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⁵⁶⁾

55) 정태용 외 2인,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10. 6, pp. 40~43

56) 일본 관세국, 행정심판절차,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 검색일자 2015. 11. 14.

〈표 Ⅲ-6〉 일본 관세법 구성

관세의 부과와 징수		통관절차	
제1장 총칙 (제2~14-5)	제1절 통칙	제3장 (제15~28)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
	제2절 기간 및 기한		
	제3절 송달		
제2장 관세의 확정 및 납부	제1절 통칙	제4장 보세구역 (제29~62-15)	제1절 총칙
	제2절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관세 의 확정		제2절 지정보세지역
	제3절 부과세방식에 따른 관세 의 확정		제3절 보세장치장
	제4절 관세의 납부 및 징수		제4절 보세공장
	제4절의2 부대세		제5절 보세전시장
	제5절 기타		제6절 종합보세지역
제7장 (제80~88)	수용 및 유치	제5장 (제63~66)	보세운송
제7장의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8장 (제89~93)	불복절차	제6장 통관 (제67~79-5)	제1절 총칙
제9장 (제94~108-3)	잡칙		제2절 수출신고의 특례
			제3절 제출서류 및 검사절차
			제4절 수출입 금지화물
제5절 수출입에 관한 증명 등			
제10장 (제108-4~118)	벌칙	제6절 수입의 허가 및 수입화물의 거래 등	
제11장 (제119~140)	범칙조사 및 처분	제7절 외국화물의 반송	
		제8절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	

출처: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31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2) 관세정률법

관세정률법은 순수 세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 결정을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면과 환급 대상 중 항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WTO 관세평가협약 가입국가로서 협약상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해당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음을 이 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세정률법에 규정된 세율은

장기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간이세율 그리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특수관세로, 특수관세로는 편익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이 있다. 간이세율은 신속 통관을 위해 일괄적으로 정한 세율로, 관세법 별표에 기본세율과 간이세율이 명시되어 있다.

관세정률법에 규정된 감면과 환급제도는 영구적인 제도로 감면의 경우 무조건 감면과 일정 기간 동안 수출될 것 또는 특정 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조건 감면에는 수입 전·후로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감세 또는 환급(제10조),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법 제12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다가 재수입된 화물(제11조),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법 제14조의3), 외교관 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법 제16조) 등이 속하며, 조건부 감면으로는 특정용도 면세(법 제15조), 재수출 면세(법 제17조), 재수출 감면(법 제18조) 등이 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과 같은 제도가 없고, 극히 일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사전에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제10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의 환급(제19조), 과세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제19조의2) 등이 속한다.⁵⁷⁾

〈표 III-7〉 일본 관세정률법 구성

구분	조항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1조 외국으로 보는 지역
과세표준 및 세율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3조의2 입국자의 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 제3조의3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
관세평가	제 4 조 과세가격의 결정의 원칙 제 4 조의2 동종 또는 유사 화물에 관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 4 조의3 국내판매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기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 4 조의4 특수한 수입화물에 관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 4 조의5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 4 조의6 항공운송화물 등에 관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특례 제 4 조의7 가격의 환산에 사용되는 외국환율(爲替相場) 제 4 조의8 과세가격의 계산에 사용되는 자료 등 제 4 조의9 정령(政令)에의 위임

57)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p. 22~23.

〈표 Ⅲ-7〉의 계속

구분	조항
특수관세	제 5 조 편익관세 제 6 조 보복관세등 제 7 조 상계관세 제 8 조 부당염매관세 제 9 조 긴급관세등 제 9 조의2 관세할당제도
감면 및 환급	제10조 변질, 손상 등의 경우의 감세 또는 관세환급 등 제11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 제12조 생활 관련 물자의 감세 또는 면세 제13조 제조용원료품의 감세 또는 면세 제14조 무조건면세 제14조의2 재수입감세 제14조의3 외국에서 채포(採捕)된 수산물 등의 감세 또는 면세 제15조 특정용도면세 제16조 외교관용 물자 등의 면세 제17조 재수출면세 제18조 재수출감세 제19조 수출화물의 제조용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관세환급 등 제19조의2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관세환급 등 제19조의3 수입 시와 같은 상태로 재수출된 경우의 관세환급 등 제20조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의 관세환급 등 제20조의2 경감세율 적용화물의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 제20조의3 관세의 경감, 면세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

출처: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33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3) 관세잠정조치법

관세잠정조치법은 순수한 세법이라는 점에서는 관세정률법과 같으나, 정률법과 달리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⁵⁸⁾

관세법과 관세정률법의 임시 특례로서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잠정세율은 관세잠정조치법에 의거하여 단기적인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특정 품목에 한하여 기본세율을 일시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거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잠정세율에는 관세할당,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과세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추가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 신선 등 쇠고기 및 냉동 쇠고기에 대해 수입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거나 EPA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관세긴급조치의 세 종류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일반 국가보다

58)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34.

낮은 관세를 정하는 특혜관세제도를 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 등에 대해 특혜를 공여하는 목적으로 적용하며 해당 원산지인정기준도 이 법 시행령에 포함하고 있다.⁵⁹⁾

한편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한 수출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등은 정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적용한다.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된 별칙조항들은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를 면제받거나 특정 용도에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경감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양도한 자에 대한 징벌을 규정하며, 관세법에 따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에 준용한다.⁶⁰⁾

〈표 III-8〉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구성

구 분	조 항
잠정세율 (특별간급관세, 관세간급조치, 관세할당 등)	제1조 목적 제2조 잠정세율
	제7조의3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간급관세
	제7조의4 과세가격이 발동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의 특별간급관세
	제7조의5 신선 등 쇠고기 및 냉동 쇠고기에 대한 관세간급조치
	제7조의6 살아 있는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관한 관세간급조치
	제7조의7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한 관세간급조치
	제7조의8 호주협정에 근거한 관세 양허의 적용 정지
특혜관세	제8조의6 경제연계협정에 기한 관세할당제도
	제8조의2 특혜관세 등 제8조의3 특혜관세 등의 적용의 정지
감면의 적용	제4조 항공기부품 등의 면세
	제8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하여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
	제8조의5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한 특수관세제도의 적용
	제9조 경감세율 등의 적용 절차
	제9조의2 호주 협정상 제조용 원료품에 관계되는 양허의 혜택 적용
	제12조의2 경제연계협정 원산지물품의 확인
	제13조 국제물류거점산업집적지역에서 제조된 과세물건의 확정에 관한 특례
제14조 오키나와현에서 출발하는 여객의 휴대품에 관한 관세의 면제	
사후관리	제10조 용도의 사용 등의 제한
	제11조 용도의 사용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의 관세의 징수
	제12조 관세의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
	제15조 세관직원의 권한
	제16조 내지 제18조 벌칙
	제19조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출처: 일본 관세국, 관세잠정조치법 <http://law.e-gov.go.jp/htmldata/S35/S35H0036.html>
 검색일자 2015. 11. 24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59)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25.

60)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25.

3. EU

가. 관세법 연혁

상품의 자유이동을 촉진하고 단일시장 내의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유럽연합은 1968년에 유럽관세동맹(European Customs Union)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6월 유럽경제공동체의 모든 회원국 간의 관세와 이와 동등한 무역제한을 철폐하고 역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대외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를 마련하였다. 1987년에는 단일 유럽의정서가 발효되어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직접 효력을 갖는 유럽공동체 규칙이 가능해졌고, 1993년에는 유럽 단일시장의 발족으로 유럽연합권 내의 국경세관이 폐지되어 유럽연합 내 관세법의 단일화가 실현되었다.⁶¹⁾

유럽연합의 현행 관세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1992년 10월 12일에 제정되어 1994년 1월부터 시행된 전체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럽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CCC),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이다.⁶²⁾ 본 기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1993년 7월 2일 「관세법 시행규칙(Customs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이 제정되었다. 공동관세법의 제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역외의 국가들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절차 및 일반규칙을 단일화한 법체계가 확립되었고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전체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로 운영되고 있다.⁶³⁾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관세행정 of 전신화에 따른 통관환경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2008년 「현대화 유럽공동관세법(Modernized Community Customs Code(MCC), Regulation (EC) No 450/2008)」을 추진하여 같은 해 6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공동 결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근대적인 관세법전의 철저한 정비, 무역의 용이함과 관세 통제가 균형을 유지하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화되고 단순화된 세관 절차를 갖춘 범유럽의 전자적 관세환경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였으나,⁶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IT 시스템 구축의 곤란 등을 문제점

61)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운·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p. 118~119.

62)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운·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19.

63)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35.

64)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운·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19.

보완을 이유로 적용을 보류하였다. 따라서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은 여전히 유럽공동관세법이 유효하다.⁶⁵⁾

한편 2003년부터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현대의 무역거래에 보다 적합하게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관세법의 채택과 시행을 요구해왔으며,⁶⁶⁾ 이에 따라 EU는 관세동맹 차원에서 장기 전략으로 국경보안 강화, 국제무역의 사기 방지, 전자통관 환경의 확대를 위한 세관 현대화계획(Customs 2013 Program)을 추진해왔다.⁶⁷⁾ 결국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기존의 현대화 유럽공동관세법을 보완하여 「신유럽공동관세법(Union Customs Code(UCC), Regulation (EU) No 952/2013)」을 EU 관보에 최종 공포하였다. 신유럽공동관세법은 2013년 10월 30일 발표되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었으나,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했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⁶⁸⁾ 이 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유럽 공동관세법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⁶⁹⁾

나. 신유럽공동관세법의 구성 체계

신유럽공동관세법은 기존의 조문체제와 유사하게 총 9개의 부로 구성되어 일반규정, 관세의 부과, 징수, EU 역내에 반입된 화물의 통관절차, 세관신고, 관세의 경감, 수출,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

신유럽공동관세법은 세관에서 허용한 처리 또는 용도(customs-approved treatment or use)가 유럽 관세영역에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확정되기까지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 관세영역에의 물품의 반입, 세관의 물품의 제시, 약식신고(summary declaration) 및 제품의 적하, 관세법상 인정된 처리 또는

65) 성태곤, 「EU의 신관세법 및 통관시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2013.

66)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441_en.htm, 검색일자 2015. 11. 24.

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EU의 신관세법 채택」, 『주요국의 조세동향』 13-10호, 2013, p.1.

68) 서미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fita/bbs/bbsView.do?bbs_seq_n=209774&bbs_cd_n=72¤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3&dept_v=&from_brf=brf&brf_cod_e_v=3, 검색일자 2015. 11. 30.

69) 서미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fita/bbs/bbsView.do?bbs_seq_n=209774&bbs_cd_n=72¤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3&dept_v=&from_brf=brf&brf_cod_e_v=3, 검색일자 2015. 11. 30.

용도의 확정 의무, 일시보관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환적(transit) 절차에 따라 유럽연합 역내를 이동하는 비유럽연합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⁷⁰⁾

다만, 관세법령 위반 시의 조사와 처벌 관련 규정들은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은 회원국 세관의 권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⁷¹⁾

〈표 Ⅲ-9〉 EU 신관세법의 구성

EU 신관세법 (UCC,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EU) No 952/2013)			
제1부 일반조항	제1장 관세법령의 범위, 세관의 임무와 정의		제1조~제5조
	제2장 관세법령에 관한 권 리 및 의무	제1절 정보의 제공	제6조~제17조
		제2절 세관업무의 대행	제18조~제21조
		제3절 관세법령의 적용에 관한 결정	제22조~제37조
		제4절 인정 경제 사업자	제38조~제41조
		제5절 벌칙	제42조
		제6절 이의신청	제43조~제45조
		제7절 화물의 관리	제46조~제50조
		제8절 서류, 그 밖의 정보, 수수료 및 비용	제51조~제52조
제3장 통화의 변환 및 기한	제53조~제55조		
제2부 화물의 무역에 대한 수입세 또는 수출세, 기타 요소	제1장 공동관세율표 및 화물의 관세분류		제56조~제58조
	제2장 화물의 원산지	제1절 비특혜원산지	제59조~제63조
		제2절 특혜원산지	제64조~제66조
		제3절 특정 화물 원산지의 결정	제67조~제68조
제3장 화물의 과세가격	제69조~제76조		
제3부 관세채무 및 담보	제1장 관세채무의 발생	제1절 수입에 관한 관세채무	제77조~제80조
		제2절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	제81조~제82조
		제3절 수입과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채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제83조~제88조
	제2장 잠재적으로 또는 이미 존재하는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	제89조~제100조	
	제3장 수입과 수출시 발생 하는 관세채무에 대 한 일반조항	제1절 수입세액 또는 수출세액의 결정, 관 세채무의 통지	제101조~제107조
		제2절 수입세 또는 수출세의 납부	제108조~제115조
제3절 상환 및 면제		제116조~제123조	
제4장 관세채무의 소멸	제124조~제126조		
제4부 EU관세영역에 반입되는 화물	제1장 반입약식신고		제127조~제132조
	제2장 화물의 도착	제1절 EU관세영역으로의 화물반입	제133조~제138조
		제2절 화물의 제시, 하역 및 검사	제139조~제143조
		제3절 화물의 임시보관	제144조~제152조

70)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운·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20.

71)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27.

〈표 III-9〉의 계속

EU 신관세법 (UCC,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EU) No 952/2013)			
제5부 화물의 세관절차, 검사, 반출 및 처분에 관한 일반조항	제1장 화물의 관세상 지위		제153조~제157조
	제2장 화물의 세관절차	제1절 일반조항	제158조~제161조
		제2절 표준세관신고서	제162조~제165조
		제3절 간이세관신고서	제166조~제169조
		제4절 모든 세관신고서에 적용되는 규정	제170조~제176조
	제3장 화물의 검사 및 반출		제177조~제187조
제4장 화물의 처분		제188조~제193조	
제6부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및 수입세의 경감	제1절 검사		제194조~제196조
	제2절 반출		제197조~제200조
	제4장 화물의 처분		제201조~제202조
제7부 특별절차	제1장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제203조~제207조
	제2장 수입세의 경감	제1절 반환된 화물	제208조~제209조
		제2절 어업과 수산물	제210조~제225조
	제1장 일반조항		제226조~제232조
	제2장 통관	제1절 역외 및 역내 통관	제233조~제236조
		제2절 EU 통관	제237조~제239조
	제3장 보관	제1절 공동조항	제240조~제242조
		제2절 세관창고	제243조~제249조
		제3절 관세자유지역	제250조~제253조
	제4장 특정용도	제1절 일시적 허가	제254조
제2절 최종용도		제255조	
제5장 가공	제1절 일반조항	제256조~제258조	
	제2절 역내 가공	제259조~제262조	
	제3절 역외 가공	제263조~제266조	
제8부 EU관세영역으로부 터 화물의 반출	제1장 화물발송전 절차		제267조~제268조
	제2장 화물발송 시 절차		제269조~제270조
	제3장 수출과 역수출		제271조~제273조
	제4장 발송약식신고		제274조~제276조
	제5장 역수출의 통지		제277조
	제6장 수출세의 경감		제278조~제281조
제9부 전자시스템, 간소화, 위원회 절차와 최종조항	제1장 전자시스템의 개발		제282조~제283조
	제2장 관세법령 적용의 간소화		제284조~제285조
	제3장 권한의 위임과 위원회 절차		제286조~제288조
	제4장 최종조항		제289조~제291조

출처: 유럽연합 법령 정보,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69:0001:0101:EN:P>
DF, 검색일자 2015. 10. 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유럽공동관세법에 따라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관세가 무세(無稅)이고, 역외에서는 공동관세가 적용되며 관세동맹, FTA 등 개별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역외공동관세제도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외적으로는 동일한 관세율을 설정하고 있고, 공통관세율은 매년 새로 설정되고 있다.⁷²⁾

공동관세율은 Council Regulation(EC) No. 2658/87⁷³⁾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실제 적용 관세율은 이 규정의 부속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Commission Regulation(EU) No. 1006/2011⁷⁴⁾에 규정되어 있다⁷⁵⁾. 공동관세율은 복합품목분류표(the Combined Nomenclature, CN)를 구성하는데, 유럽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CN code)는 8단위로, HS코드 6단위와 CN의 소호를 확인하는 2단위로 구성된다.

4. 중국

가. 관세법 연혁

1950년 중국 중앙정부는 관세율 정책과 관세에 관한 결정 이후, 세관 설치에 관한 기본지침과 관세법 및 관세법령을 규정하기 위해 1951년 5월 1일 최초의 관세법인 ‘임시해관법’을 공포하였다. 1984년까지 중국의 관세법 체계는 개정된 바가 없다가, 1980년대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관세법 체계가 수정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하여 1985년 3월 해관총서에서 관세법 초안그룹을 설치하였다.⁷⁶⁾ 1987년 새로운 관세법 초안이 완성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은 임시해관법에 비하여 외국 무역과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⁷⁷⁾

이후 WTO 가입을 대비하기 위해 2000년 국무원의 16차 상임위원회에서 1987년

72)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운·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21.

73) 유럽연합 법령정보,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1987R2658>, 검색일자 2015. 11. 21.

74) 유럽연합 법령정보,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282:0001:0912:EN:PDF>, 검색일자 2015. 11. 21.

75)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27.

76)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52.

77)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 52.

해관법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30여 개의 행정법규와 120여개의 해관규정을 마련하였다.⁷⁸⁾

중국의 관세 관련 주요 법률로는 해관법 이외에도 대외무역법, 수출입물품검사법, 수출입관세조례, 수출입세칙 등이 있다. 해관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대외무역법은 기타법률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당연히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기타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규범성 문건 중의 하나이다.⁷⁹⁾

나. 해관법의 구성 체계

해관법은 중국 해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을 감독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로서 해관 감독관리의 법률적 근거이다.⁸⁰⁾ 총 9개의 장과 10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출입국 운송수단(제2장), 출입국 화물(제3장), 출입국 물품(제4장), 관세(제5장), 해관사무 담보(제6장), 법률집행 감독(제7장), 법률책임(제8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관법에서는 해관의 4가지 기본임무를 수출입 운송수단·화물·여행자 휴대품·우편물과 기타물품의 감독관리, 관세와 기타 세비의 징수, 밀수 단속, 해관통계 편제로 규정하고 있다.⁸¹⁾

해관법의 주요 내용은 해관조직제도, 해관감독제도, 관세제도, 해관사무담보제도 및 집행감독과 법률책임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²⁾ 해관조직제도는 해관의 설치원칙, 해관총서와 각 지역 해관기구의 소속관계와 관리체제, 해관의 임무와 직책 등으로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해관감독제도는 수출입하는 운송도구, 화물, 물품과 우편물에 대하여 해관이 감독 검사하는 주요 절차, 요구와 수속하는 권리 및 수출입하는 운송도구의 담당자, 화물의 발주인, 수화인, 물품의 소유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 해관수속을 진행하고 해관감독관리 방면의 감독 관리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관세제도에는 중국의 관세정책, 관세징수, 감면, 원칙과 수속절차, 납세의무인의 권리와 의무, 납세분쟁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수출입 화물과 송하인, 수하인이 해관수속 마감 전에 수출입물품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관은 그 화물을 통과시키는 해관사무

78)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3.

79) 강효백, 「한중 법의 연원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학연구』, No. 40, 중국학연구회, 2007, p. 327.

80)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6.

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중국』, 2013.

82)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51.

담보제도를 두고 있다. 집법감독과 법률책임의 제도는 해관집법감독, 밀수조사와 처리 및 해관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제도를 규정한다.⁸³⁾

〈표 Ⅲ-10〉 중국 해관법 구성개요

편제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
제2장 운수기관	제14조부터 제22조
제3장 수출입화물	제23조부터 제45조
제4장 휴대품 및 우편화물	제46조부터 제52조
제5장 관세	제53조부터 제65조
제6장 납세담보	제66조부터 제70조
제7장 업무감독	제71조부터 제81조
제8장 벌칙	제82조부터 제99조
제9장 부칙	제100조부터 제102조

출처: 중국 관세청, <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자 2015. 8. 17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수출입관세조례는 해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허가 화물, 입국 물품의 수출입 관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수출입화물 관세율의 설정과 적용(제2장),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확정(제3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제4장), 입국 물품의 수입세 징수(제5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제1장 총칙의 일부,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및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이 해당된다.⁸⁴⁾

〈표 Ⅲ-11〉 수출입관세조례 구성개요

편제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8조
제2장 수출입화물 관세세율의 설정과 적용	제9조부터 제17조
제3장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 가격 확정	제18조부터 제28조
제4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	제29조부터 제55조
제5장 국경유입 물품의 수입세징수	제56조부터 제63조
제6장 부칙	제64조부터 제67조

출처: 중국 관세청 <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자 2015. 8. 17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83)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51.

84)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6.

「수출입세칙」이란 관세세칙, 해관세칙이라고도 부르며, 국가의 관세정책과 경제정책을 근거로 법정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실시하는 수출입화물과 물품에 대한 세율표이다.⁸⁵⁾ 1992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품명칭 및 코드조정제도인 HS 시스템을 기초로 수출입세칙을 실시하고 있다.⁸⁶⁾

수출입세칙은 세율표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실시세칙인 법령과 사용세칙인 관련 설명과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입세칙은 중국 해관이 관세를 징수하는 법률적 근거이자 중국 관세정책의 구체적인 구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현행 수출입세칙에는 <세율적용설명>,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세칙>, <중화인민공화국수입세칙>, <수입상품관세배액세목세율표>, <수입상품세칙잠정세율표, 수출상품세칙잠정세율표>, <일부세목정보기술제품세율표>등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⁸⁷⁾

수출입관세조례 및 수출입세칙의 경우 중국의 행정법규로서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공포하는 규범성 법률문건의 일부로⁸⁸⁾ 우리나라의 법규명령, 즉 대통령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⁸⁹⁾

85)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7.

86)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7.

87)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7.

88) 강효백, 「한중 법의 연원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학연구』, No. 40, 2007, p. 327.

89)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p. 47.

IV

요약

관세제도는 관세라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규율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와 관련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다만, 관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 '국제간 교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조약과 각종 국제규범의 틀이 직접 적용되며 관세가 재정수입 측면보다 자유로운 교역을 지향하는 범주에서 산업 또는 통상정책적 측면이 중시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다른 주요한 정책목표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국세법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1. 관세법의 조세법적 특징

앞에서는 입법목적과 정책의 지향점, 세법의 지배원칙, 세법운동에 있어서의 한계성, 조세채무의 성립과 과세표준 확정과정의 측면과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내국세제와 관세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내국세제와 관세제도의 배경을 이루는 이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유사성이 높은 세법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통폐합이나 준용규정의 남용, 정책의 입안, 법령의 해석과 적용, 혹은 행정조직의 통폐합 등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의 효율성과 납세비용의 경감 등을 위해 양 세제의 통일과 조화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상 조화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세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내국세법상의 정상가격 중 일부만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한편, 내국세 과세당국과 관세당국은 국제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상호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⁹⁰⁾ 이렇게 제공받은 자료는 세무조사 또는 관세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독자적인 과세와 관련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상대방 과세관

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관세법」 제37조의3.

청에 입수되는 정보의 내용에는 자신의 정보관리체계에서는 입수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의 상호제공은 세무조사 또는 관세조사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법 운영 현황 비교

조사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EU,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법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산출방식, 신고납부 방식과 예외적으로 부과지 방식의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율에 있어서는 근거법령과 운영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관세는 재정수입 측면보다는 산업보호 또는 국제통상의 확대와 관련된 무역정책 수단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조세입법에 대한 심의, 정책, 법의 운영 측면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에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관세율의 종류와 적용순위를 규정하고 HS협약 품목분류체계에 기초하여 기본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관세율표를 관세법 별표로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법전에 수록하지 않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관리 및 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EU와 중국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관세법에 관세의 부과, 징수와 불복절차를 규정하되, 관세정률법에 의거하여 장기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간이세율 그리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편익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관세를 운용하고 단기적인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특정 품목에 한하여 기본세율을 일시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거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잠정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 공동관세법 이외에 Council Regulation(EC) No. 2658/87에 의거하여 공동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관세정책과 경제정책을 근거로 법정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실시하는 수출입화물과 물품에 대한 세율표로서 「수출입세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공포하는 규범성 법률문건의 일부로 관세를 징수하는 법률적 근거이자 중국 관세정책의 구체적인 구현 수단이다.

참고문헌

- 강효백, 「한중 법의 연원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학연구』, No. 40, 중국학연구회, 2007, pp. 325~346.
- 관세청, 『미국 관세법』, 2012.
- 권해호, 『예산법률주의 도입 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 좋은예산센터, 2005.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4.
- 김단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 pp.73~89.
-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 pp.159~204.
- 김중근, 「관세법상 가산제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기준」, 『관세학회지』, 제12권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1, pp.3~23.
- 김진웅,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조세연구』, 제9집 제3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pp.29~70.
-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上)』, 1994, pp. 557~679.
- 성태곤, 「EU의 신관세법 및 통관시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2013.
- 성한경 · 이민선 · 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4.
- 손병주 · 한위수 · 주한길 · 김성호 · 주성준 · 송준용 · 김규석 · 임대승, 『관세법 체계 정비방안』,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12.
- 신현중, 『무역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6.

- 안경봉·오윤,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 입방안」,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8, pp. 241~275.
- 안대희, 『조세형사법』, 서울: 법문사, 2005.
- 오윤,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조세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 세법학회, 2006, pp. 234~273.
- 이경근,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Treaty shopping 방지방안」, 『조세연구』 제6 집, 2006, pp. 65~88.
- 이대복·김창봉·신태욱·김주홍·신정훈,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 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운·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 청·한국법제연구원, 2013.
- 이철희, 『관세법정해』, 한국관세협회, 1977.
- 임승순, 『조세법』, 서울: 박영사, 2015.
- 장병철, 『관세법』, 서울: 무역경영사, 1999.
- 정성운,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 방안」,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한국세법학회, 2014, pp. 267-304.
- 정재완, 『관세법』, 서울: 무역경영사, 2015.
- 정재완,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5, pp. 3~23.
- 정재호, 「주요 외국의 관세법 체계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내부자료), 2015.
- 정진오·정지선,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5 권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 pp. 46~91.
- 정태용·함인선·김남철,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 학회, 2010. 6, pp. 40~43.
-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제6집, 2006, pp. 451~464.

- 주일 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 최미희·이한규, 「조세정책세계 입법심의의 문제와 과제」,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 표학길, 『국제무역론』, 서울: 무역경영사, 200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EU의 신관세법 채택」, 『주요국의 조세 동향』 13-10호, 201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중국』, 2013.
- 일본 재무성, 「관세법연구회정리(関税法研究会とりまとめ)」, 2006. 6.

〈웹사이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9&layoutMenuNo=104, 검색일자 2015. 8. 19.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검색일자 2015. 11.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 8. 19.
- 미국 법령정보, www.law.cornell.edu, 검색일자 2015. 11. 27.
- 서미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fita/bbs/bbsView.do?bbs_seq_n=209774&bbs_cd_n=72¤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3&dept_v=&from_brf=brf&brf_code_v=3, 검색일자 2015. 11. 30.
-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검색일자 2015. 10. 31.
- 일본 관세국, 관세잡정조치법, <http://law.e-gov.go.jp/htmldata/S35/S35HO036.html>, 검색일자 2015. 11. 24.

일본 관세국, 행정심판절차,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 검색일자 2015. 11. 14.

유럽연합 법령 정보,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69:0001:0101:EN:PDF>, 검색일자 2015. 10. 31.

유럽연합 법령 정보,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1987R2658>, 검색일자 2015. 11. 21.

유럽연합 법령 정보,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282:0001:0912:EN:PDF>, 검색일자 2015. 11. 2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441_en.htm, 검색일자 2015. 11. 24.

이상훈 · 조은아, 「자녀 전세금에 뭉치돈 편법 증여... 주변 전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려」, 동아일보, 2015.9.10., <http://news.donga.com/3/all/20150910/73534816/1>, 검색일자 2015. 12. 3.

중국 관세청, <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자 2015. 8. 17.